산업안전보건법 개정·공포 주요내용

- '26.10.27(화)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안전혁신팀 -

□ 현 황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* 개정·공포('26.10.27)

* 법률 제22122호

□ 주요내용

○ **(하도급 산안비 계상 의무화)** 그간 원도급 공사에만 산안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나, **하도급 공사**에도 **의무적으로 산안비를 반영**토록 하여 **안전비용 확보**(제72조제1항)

○ **(공기연장 사유 추가)**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**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사유**에 **폭염, 한파 추가**(제70조제1항)

○ **(작업중지)**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추가 및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 완화

- **(사업주의 작업중지)** 근로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**사업주에게 조치 요구** 가능(제51조제2항)

※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**수급인의 근로자도 도급인에게 조치 요구 가능**(제51조제3항)

- **(근로자의 작업중지)**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**작업중지** 가능(제52조제1항)

○ **(과징금)**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**산업재해**로 **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**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% 이내 **과징금 부과**(제161조의2)

□ 시행일

○ **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**('27. 4.28부터)

- **공기연장 사유 추가**는 **공포 즉시 시행**('26.10.27부터)